2018년 정규직(6 · 7급) 채용공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차별·편견 없는 직무능력(NCS)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7월 19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인원	업무내용	근무예정지역
계		60명		
정규직 (기술분야)	6급	45명	○ 승강기 법정검사(주검사자)	전국 지역사무소
	7급	15명	○ 승강기 법정검사(보조검사자)	전국 지역사무소

① 채용 예정분야 NCS기반 직무소개 : 별첨 1 참조
② 최종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
③ 채용직급 간 중복지원 불가(1개 분야만 지원 가능)
④ 지역본부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www.koelsa.or.kr)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지역사무소」 참조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공 통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채용예정일(2018. 9. 1)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60세 이상 제외)
정규직 (기술분야)	6급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에 의거한 검사인력 자격의 동등 이상인 사람
	7급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에 의거한 자체점검 자격의 동등 이상인 사람

※ 채용 결격사유 및 세부 자격요건 : 별첨 2 참조

3. 채용조건

구 분	채 용 조 건
보수 수준	○ 6급(주임) 초임 연봉(약 3,190만원)을 하한액으로 하되, 군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 ○ 7급(사원) 초임 연봉(약 2,610만원)을 하한액으로 하되, 군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

4. 채용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7. 19(목) ~ 7. 3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https://koelsa.career.co.kr > ※ 접수 마감시각을 넘겨 제출한 응시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8. 8. 3(금) 17:00** (예정) ○ 전형기준 ❖ 공통·관련분야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미기재·동일문구 반복기재 등)의 경우 불합격
필기전형	○ 시험일시 : **2018. 8. 11(토)** (예정) ○ 장 소 : 수도권 소재 고사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시간 및 장소 안내 예정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주 요 내 용</th></tr>
<tr><td></td><td colspan="2">○ 시험과목
<table>
<tr><th>구 분</th><th>과 목</th></tr>
<tr><td>6급</td><td>○ 승강기 검사기술 과목
- 승강기 검사기준 (80%)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2017.7.26)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
① 법(법률 14839호, 2017.7.26)
②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③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8호, 2017.9.4.)</td></tr>
<tr><td>7급</td><td>○ 승강기기사 출제 과목
- 승강기 개론 (20%)
- 승강기 설계 (20%)
- 일반기계공학 (30%)
- 전기제어공학 (30%)</td></tr>
</table>
○ 전형기준
❖ 필기시험의 점수가 60% 이상인 득점자 가운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상위 성적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 2018. 8. 16(목) 17:00 (예정)</td></tr>
<tr><td rowspan="2">면접전형</td><td>1차</td><td>○ 면접일자 : 2018. 8. 20(월) ~ 8. 21(화) (예정)
※ 시간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장소 : 공단 본부(경남 진주)
○ 전형방식 : 토론면접</td></tr>
<tr><td>2차</td><td>○ 면접일자 : 2018. 8. 23(목) ~ 8. 24(금) (예정)
※ 시간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장소 : 공단 본부(경남 진주)
○ 전형방식 : 경험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8. 28(화) 17:00 (예정)</td></tr>
<tr><td>임 용</td><td colspan="2">○ 임용일 : 2018. 9. 1(토) (예정)
※ 근무시작일 : 2018. 9. 3(월)</td></tr>
</table>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전형별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함

※ 채용직급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5.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서류전형 합격자 (인터넷 접수)	○ 필기전형 본인확인용 서류(별도 안내)
최종 합격자 (우편 제출)	<공통 서류> ① 입사서류 각 1부(별도 안내) ② 채용신체검사서 1부 <해당자 제출서류>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② 국가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③ 장애인 증명서 1부 ④ 자격증 사본 1부 ⑤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우편 주소 :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충무공동)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재경영부

※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 서류) 제출

6. 가산점

구 분	내 용	필기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보훈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급에 따라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점을 2배로 적용	5%
한국사 능력	○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3급) 이상의 자격자	3급 1%, 2급 2%, 1급 3%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적용

7.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완료 후에는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또한, 입사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견 시 임의 블라인드 처리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임용 후에라도 소급하여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외에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 **하향 지원자의 학력 및 자격이 사후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임용 후에라도 소급하여 입사가 취소**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기간 내[1]에 반환 청구 시 반환을 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이때, 채용서류의 반환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재경영부(☎055-751-0857)로 문의 바랍니다.

1) 반환 청구기간 : 채용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첨 1]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 승강기 법정검사】

<table>
<tr><td rowspan="4">채용분야</td><td rowspan="4">기
술</td><td rowspan="4">분류
체계</td><td>대분류</td><td>15. 기계</td></tr>
<tr><td>중분류</td><td>05. 기계장치설치</td></tr>
<tr><td>소분류</td><td>01. 기계장비설치·정비</td></tr>
<tr><td>세분류</td><td>승강기 법정검사 (공단 자체개발)</td></tr>
<tr><td>공단
주요사업</td><td colspan="4">○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의 이용자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 인증, 진단・컨설팅, 안전성 평가, 연구개발 등 안전관리 사업 및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td></tr>
<tr><td>핵심책무
(능력단위)</td><td colspan="4">○ 승강기 법정검사(완성・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 실시</td></tr>
<tr><td>직무수행내용</td><td colspan="4">○ (승강기 법정검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에 의거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국가에서 정한 검사 기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 접수에 따른 일정 안내, 검사준비,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항목별 주요 부품의 기능 및 안전성 테스트,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td></tr>
<tr><td rowspan="2">일반요건</td><td colspan="2">연령</td><td colspan="2">공고문 참조</td></tr>
<tr><td colspan="2">성별</td><td colspan="2">무관</td></tr>
<tr><td rowspan="2">교육요건</td><td colspan="2">학력</td><td colspan="2">무관</td></tr>
<tr><td colspan="2">전공</td><td colspan="2">승강기, 기계, 전기・전자학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td></tr>
<tr><td>필요지식</td><td colspan="4">○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준의 이해, 검사유형(완성, 정기, 수시, 정밀안전)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판정기준에 대한 이해, 승강기 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등)에 대한 기계구조 이해, 승강기 설치 부품별 특성 및 성능, 승강기 설치도면(전기, 기계) 해석, 승강기 조작 매뉴얼,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 검사 측정장비 종류 및 사용 메뉴얼 등</td></tr>
<tr><td>필요기술</td><td colspan="4">○ (승강기 법정검사) 검사기준 해석 및 검사결과 판정능력, 검사기록표 및 검사결과통보서 등 기술문서 작성능력, 검사정보시스템(전산) 사용능력, 기계실・승강로・승강장・피트 등 구조파악 및 검사능력, 승강기 설치도면(전기・기계) 해석 능력, 검사 측정 장비 사용능력, 승강기 관리주체에 검사결과 설명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td></tr>
<tr><td>직무수행태도</td><td colspan="4">○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 검사기준 및 메뉴얼을 준수하는 태도, 공정한 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정확한 설명 및 업무처리 등), 안전수칙 준수로 검사수행 시 위험점(협착점, 끼임점, 물림점 등) 주의</td></tr>
<tr><td>필요자격</td><td colspan="4">○ (주요자격) 승강기 기사, 승강기 산업기사, 승강기 기능사
○ (보조자격) 기계, 전기, 전자, 안전 관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td></tr>
<tr><td>직업기초능력</td><td colspan="4">○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td></tr>
<tr><td>참고사이트</td><td colspan="4">○ www.ncs.go.kr 홈페이지 → NCS・학습모듈 검색</td></tr>
</table>

[별첨 2]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별표 7의3

구 분	자 격 기 준
검사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제1항제1호부터 제9호

구 분	자 격 기 준
자체점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해석 관련[승강기안전과-1371(2018.5.23.)>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 또는 승강기 자격증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